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수소융합얼라이언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 지역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5. 협약일 ~ 2024. 11. 8.
- 모집기간 : 2024. 4. 17.(수) ~ 2024. 5. 7.(화) 18:00까지
- 사업목적
 - 전라남도 내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요건 ※ ①, ②, ③-1(테크패키지, 비즈패키지) 또는 ①, ②, ③-2(엔트리패키지)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구분	테크패키지 또는 비즈패키지 지원요건	엔트리패키지 지원요건
전남지역 소재 여부	① 전남 지역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단순 영업소 제외)	
수소전문기업 지정 여부	②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수소산업’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 계획 유무	③-1 ‘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③-2 ‘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없지만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 기간 내에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은 사업 기간 내에도 가능하지만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지정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 (2024년 12월)에 가능함

(수소전문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일정 기준을 충족 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은 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는 특허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p.10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참고)
예. 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등록’이 아닌 ‘출원’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① 테크패키지 참여 기업

- 총 480,000천원,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text{총사업비} = \text{지원금(국비 및 지방비)} + \text{기업부담금(현금)}$$

② 비즈패키지 참여 기업

- 총 120,000천원,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text{총사업비} = \text{지원금(국비 및 지방비)} + \text{기업부담금(현금)}$$

③ 엔트리패키지 참여 기업

- 총 50,000천원, 기업당 25,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text{총사업비} = \text{지원금(지방비)} + \text{기업부담금(현금)}$$

※ 사업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소 20% 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을 매칭해야함

※ 총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집행해야함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내용

① 테크패키지 참여 기업

-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 분야에서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60,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② 비즈패키지 참여 기업

- 판로개척 및 컨설팅 분야에서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60,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③ 엔트리패키지 참여 기업

-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25,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구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40,000
	인증 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 평가	20,000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출원·등록	5,000
	기술 도입·보호	국내외 기술 도입 또는 기술 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30,000
	연구장비 활용	국가연구시설 또는 지역 기관 등의 연구 장비 활용	10,000
판로 개척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10,000
	디자인 개선	신규 및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30,000
	BI·CI 개발	BI(Brand Identity) 및 CI(Corporate Identity) 개발	10,000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10,000
	전시회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전시회 참가, 전시 장치 설치 등	10,000
컨설팅	기술 컨설팅	기술 컨설팅 및 기술력 향상	10,000
	기술 외 컨설팅	기술 외 컨설팅(경영 환경 개선 등)	10,000
기타	맞춤형 지원	그 외 현재 기업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검토 예정	10,000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맞춤형 전문가)의 방문 상담은 기업당 5회 이내 지원 예정임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임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범위 이상의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해야함

※ 예. 테크패키지로 시제품 제작 40,000천원, 인증 획득 8,000천원, 기술 컨설팅 4,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금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국비 및 지방비]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총사업비의 10%]
1	시제품 제작	40,000	10,000	50,000	5,000
2	인증 획득	8,000	2,000	10,000	1,000
3	기술 컨설팅	4,000	1,000	5,000	500
합계		52,000	13,000	65,000	6,500

※ 예. 엔트리패키지로 시장조사 10,000천원, 전시회 8,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금 (기업당 25,000천원 내외) [지방비]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총사업비의 10%]
1	시장조사	10,000	2,500	12,500	1,250
2	전시회	8,000	2,000	10,000	1,000
3	-	-	-	-	-
합계		18,000	4,500	22,500	2,250

○ 지원방식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기관)을 직접 선택함
- 사업선정 시 지원기관-수혜기업-공급기업(기관)간 3자 협약을 체결함
- 수혜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에서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 여부를 검토 후 공급기업(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체 확인증 확인 후 수혜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과 함께 기술닥터 매칭 및 방문 상담을 5회 이내 지원함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서류제출 : 2024. 4. 17. ~ 5. 7.

※ 공고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ei.re.kr> - 알림마당 - 기업지원공고)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2024. 5. 8. ~ 5. 17.

- 선정평가 : 2024.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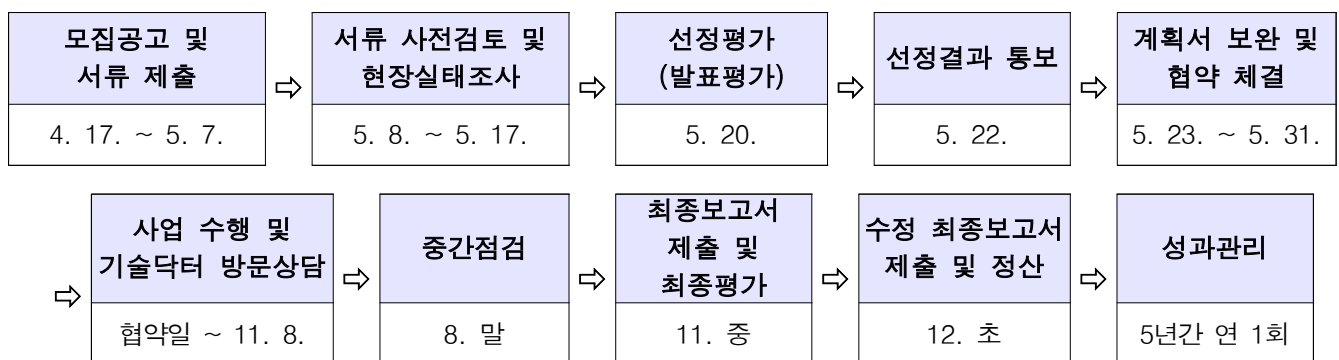
※ PPT 발표자료 파일은 5. 16.까지 이메일 제출, 인쇄본 7부는 선정평가 당일 제출

- 선정결과 통보 : 2024. 5. 22.

-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 2024. 5. 23. ~ 5. 31.

- 사업 수행 : 협약일 ~ 2024. 11. 8.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4. 11.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 지정된 KSIC코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등)	필수	서식1	p.1
2	상세 기술서	필수	서식2	p.3
3	기업 소개서	필수	서식3	p.9
4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기술서 * 증빙 또는 설명 자료 첨부	필수 선택	테크 패키지 비즈니스 패키지 엔트리 패키지	서식4 p.12
5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필수 선택	테크 패키지 비즈니스 패키지 엔트리 패키지	참고1 서식5 p.15~16
6	기업 애로 조사서	필수	서식6	p.17
7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확인서	필수	참고2 서식7	p.18~19
8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8	p.20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필수	서식9	p.22
10	수행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협약서	필수	서식10	p.23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대표자,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기획위원 등)	필수	서식11	p.24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관련 동의서	필수	서식12	p.25
13	평가위원 추천표	필수	참고3 서식13	p.26~27
1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필수	서식14	p.28~29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
16	공장등록증 사본	선택	-	-
17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1년, 2022년, 2023년)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필수	-	-
18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1년, 2022년, 2023년)	필수	-	-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하여 제출	필수	-	-

- 제출기간 : 2024. 4. 17.(수) ~ 2024. 5. 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스캔본) 또는 우편 제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서류 1부 + 사본 7부는 현장실태조사일(5. 8. ~ 5. 17.)에 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제출처 : zosoto9009@gei.re.kr (58656)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 녹색에너지연구원 성과확산실 에너지산업육성팀 정혜연 선임연구원	
문의처 : 유승오 에너지산업육성팀장 (061-288-1141) 정혜연 선임연구원 (061-288-1143) 전영길 수소산업팀장 (061-288-1071) 최지은 선임연구원 (061-288-1072) 박홍란 선임연구원 (061-288-1073)	

5. 평가기준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자격 검토
 -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현장실태조사
 - 제출서류 원본 수령 및 확인
 - 현장실태조사표 작성

○ 선정평가

- 평가범위 : 신청서류 및 PPT 발표 ※ PPT 발표시간 15분, 질의 15분 이내
- 평가방법 : 관련 분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7인 내외, 위원장 1인포함)를 통해 종합적 평가 및 선정
- 평가항목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사업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항목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0점]	기업현황 [10점]	•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	5
		• 기업현황의 적합성(업종, 참여인력, 매출액 등)	5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10
		•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사업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20점]	•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5
		•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5
사업추진 체계 [10점]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 [10점]	• 지원기업 및 공급기업(물품, 서비스 등) 구성의 적정성 •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10
성과 및 기대효과 [35점]	성장 가능성 및 경제 기여도 [35점]	•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10
		•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10
		•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10
		•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5
사업비 구성 [5점]	사업비의 적정성 [5점]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	5
합 계			100

- 점수 산출 방법

- 평가위원 중 신청 기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참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점수 집계시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 점수로 산출
-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 평가위원 중 신청 기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참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신청서류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하지 않은 내용, 공란 및 제반서류 미제출 (누락)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 여부, 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 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접수 후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을 위배했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의무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선입금해야 함(확인 필수)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 ※ 예. 시제품 제작 결과물, 납품계약, 타사업 수주 등 관련 내용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고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안내

□ 수소분야 기술력에 대한 증빙 서류

○ 수소분야 특허등록증

※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 인정 기준은 특허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

(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등록'이 아닌 '출원'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

□ 수소분야 매출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

구 분	비 고
전자세금계산서	- 품목상 수소관련 키워드가 기입되어있거나,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계산서
납품실적증명원 혹은 사업실적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불가시 제출
수출신고필증	- 수출액 증빙 서류
기타 인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	- 원청기업의 수소분야 활용 및 납품 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문 등

※ 상기 서류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납품 확인서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

□ 매출 인정 기준

분 야	대 상	인정 기준
제품(부품) 제조 및 판매	수소관련 제품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소생산, 저장 등 전주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인정 - 제품 :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 부품 :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 소재 : 촉매, 복합재, 금속 등 - 장비 :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수소관련 부품	
	수소관련 소재	
	수소관련 장비	
	수입 판매	(기준) 수입 후 가공, 공사 등 추가공정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매출 불인정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부생수소	(기준)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관련 매출
	천연가스 추출 등	
	수전해	
공사 및 시공	수소충전소 구축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매출 불인정 - 하도급 공사중 수소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 인정(예: PSA구축 용역 등)
	수소생산기지 구축	
	출하설비 구축	
	연료전지 시공	
	수전해 설비 구축 등	
기타	확인불가 매출	(기준) 매출 불인정
	예외 사항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 상기 평가기준은 전문가 의견,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